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전용계좌」 특약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약관-321 호(2025.05.16)

제 1 조 (적용 범위)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고 한다.)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예금 과목 및 상품 종류)

- ① 이 예금의 예금 과목은 보통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
- ② 이 예금의 상품 종류는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구분합니다.

제 3 조 (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수입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4. 「관세법」 제 84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괴상의 주조물
5. 「관세법」 제 84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6. 「관광진흥법」 제 2 조의 제 2 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 196 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용역

제 4 조 (가입 용도 및 목적)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 조의 4 와 제 106 조의 9 와 106 조의 11 에 따라 “금사업자” 간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와 “스크랩등사업자” 간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경우와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제 5 조 (예금의 신규 등)

- ① “전용계좌”는 거래품목 종류별(금 관련 제품, 스크랩등, 면세점 송객용역)로 사업자별 한 곳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 ② “전용계좌” 신청 시 당행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전용계좌”에 가입하는 사업자는 당행에 사업장별로 복수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④ “전용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 명의의 당행 사업자통장을 연결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결계좌를 신청한 경우 연결계좌로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 ⑤ 사업자 폐업 시에는 기존 “전용계좌”도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6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 7 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 8 조 (이자)

- ①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과목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온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 1. 보통예금 : 매년 6 월, 12 월의 제 3 금요일
 - 2. 기업자유예금 : 매년 3 월, 6 월, 9 월, 12 월의 제 3 금요일
- ② 제 1 항의 예금이자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
- ③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한 계좌인 경우 전환일이 속한 결산기에 대해서는 해당 결산기 최초 보유 통장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제 9 조 (거래 이용매체)

매매 대금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 “전용계좌” 개설 후 아래의 거래 이용매체를 사용하여 매매대금을 결제합니다. 거래 이용매체의 종류는 사업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향후 변경 또는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1. 영업점 창구
- 2. 기업 인터넷뱅킹 서비스
- 3. 기업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제 10 조 (예금의 전환)

- ① 고객 요청 시 아래의 이용매체를 사용하여 기 보유한 당행 보통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에서 “전용계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1. 영업점 창구
 - 2. 기업 인터넷뱅킹 서비스
 - 3. 기업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 ② "전용계좌"로 전환 시 전환일부터 제 12 조의 우대서비스가 적용됩니다.

제 11 조 (매매 대금의 흐름 등)

- ① 매입자는 “금 관련 제품”, “스크랩등”, “면세점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본인의 “전용계좌”로 매매에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하며 제 9 조의 거래 이용 매체를 통한 결제 시 매입자의 “전용계좌”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출금되어 공급가액은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자 거래은행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계정’으로 입금됩니다.
- ②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업자에게 정산·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동 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전용계좌”로 입금됩니다.
- ③ “전용계좌”로 입금된 공급가액과 정산·환급세액은 사전에 신청한 본인의 연결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계좌로 실시간 이체됩니다.
- ④ 매매 대금 등의 거래한도는 현행 전자금융공동망업무 규약에 따릅니다.
- ⑤ “전용계좌”를 통한 결제 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오류, 착오 조작 등에 의한 자금반환 청구 내용은 금융결제원 “부가가치세납부중계공동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제 12 조 (우대서비스의 제공)

- ① “전용계좌”를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서비스 관련한 사업자간 결제거래에 한하여 아래의 수수료를 횡수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1. 영업점 창구를 통한 당·타행 이체 수수료
 2.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한 당·타행 이체 수수료
 3. 기업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당·타행 이체 수수료
 4. 입출금내역 문자 통지 서비스 수수료
- ② “전용계좌”에서 당행 본인 명의 연결 등록된 계좌(연결계좌)로 이체 거래 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제 13 조 (우대서비스 변경)

수수료 우대서비스의 세부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변경 시행일 1 개월 전 1 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 21 조 제 2 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14 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

금융결제원 “부가가치세납부중계공동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용계좌와 관련된 정보 (계좌번호, 고객명,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내역 등)는 국세청, 금융결제원 및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참여 금융회사 앞 제공됩니다.

제 15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합니다.

제 16 조 (계좌의 해지 등)

“전용계좌”를 모두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정산이 불가능하게 되며, 당행 부가가치세관리계정에 관리 중인 부가가치세는 분기 익월 25 일에 국고로 귀속됩니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 칙

이 특약은 2024년 7월 1일부터 기 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이 특약은 2025년 6월 17일부터 기 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